

경운대학교 전과(부)에관한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의 전과(부)(학과 및 학부, 전공 간 이동을 말함)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자격) ① 현 소속 학부(과)의 수강신청 전체성적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인 자로서 학년별 수료 학점 이상 취득한 자

②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자

③ 전과(부) 대상 자격은 2학년 이상으로 한다.

제3조(기간) ① 전과(부)는 해당학년 학기 시작 전 30일전에 허가할 수 있다.

제4조(방법) ① 전과(부)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, 학부(과)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과(부) 신청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전과(부)신청원 1부
2. 학적부 사본 1부
3. 성적증명서 1부
4. 전과(부)신청사유서

제5조(허가 및 제한사항) ① 전과(부)는 전공학부(과) 단위별 약간 명을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전과(부)는 전공 단위별 입학정원의 50% 범위 안에서 다른 학부(과)로부터의 전과(부)를 허가할 수 있으나, 전입학과(부)에서 전과 여석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. 단, 모집중지 학과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격 및 전과의 범위를 확대 할 수 있다

③ 전과(부)는 재학 중 1회에 한하고, 주·야 교차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.

④ 전과(부)는 신청자 수가 희망 학과 수용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전과(부)신청사유와 성적 심사에 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.

⑤ 안경학과, 물리치료학과, 간호학과, 작업치료학과, 치위생학과, 임상병리학과로 전과는 1학년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여석의 50%만 2학년으로 전과를 허용 할 수 있다.

⑥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전과(부)를 허가하지 아니한다.

⑦ 학부(과)운영 및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학부(과)를 제한 할 수 있다.

제6조(전과(부) 학생의 학점인정 및 교육과정) ① 전과(부) 학생의 기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과(부) 허가된 학부(과)의 교육과정에 준해 학과에서 인정한다

② 전과(부)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및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3학년 편입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③ 전과(부)한 자는 전출한 학부(과)를 부전공이나 제2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.

제7조(기타) 전과(부)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